

■ 화제의 뉴스 ■

3. 법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도 건설사는 학교발전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 (2011나8858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이며,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며, A사가 학교 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 법률신문 | 2012. 5. 12.